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9 발의연월일: 2021. 1. 28.

발 의 자:진선미・황운하・민홍철

송갑석 · 안호영 · 김민철

김원이 · 최혜영 · 김홍걸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무 원과 협동조합·지방공기업 등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 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임원을 비롯하여 상근 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자) 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	5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	
당하는 자(<u>제5호 및 제6호의</u>	<u>제</u> 6호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	
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